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

제출년월일 : 1998년 8월 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개정이유

-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등록세의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자동차 내수판매를 촉진하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하기 위함

주요골자

- 1가구당 1대 초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세를 폐지

그 동안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2배)하던 것을

⇒ 일반세율로 완화하여 과세토록 함

※ 자동차 취득시 현행 지방세법상 일반세율

- 취득세 : 1,000분의 20

- 등록세 : 1,000분의 50 (단, 경자동차는 1,000분의 20)

☞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제132조의2제3항

조 례(안) : 별 첨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기타 참고자료 : 별 첨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1가구당 1대 초과 자동차에 대한 세율적용 특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포일 이후에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및 제1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세는 1,000분의 20, 등록세는 1,000분의 50(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자동차(등록세의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